

#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추경예산 개요

###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3조 7,449억원으로 당초보다 3조 4,653억원(17.1%)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b>합 계</b>		20,279,266	23,744,942	3,465,276	17.1
시 세		20,023,706	20,023,706	-	-
세외 수입	경상적	253,930	253,930	-	-
	임시적	220,251	220,251	-	-
보조금	국고 보조금	1,630	1,630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887,852	887,852	100.0
	법정 잉여금	-	2,577,424	2,577,424	10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2021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일반회계		20,279,266	23,744,942	3,465,276	17.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3,465,276	3,465,276	순증
순세계잉여금		-	887,852	887,852	순증
법정잉여금		-	2,577,424	2,577,424	순증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 예산	2021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	증감	
잉여금	-	3,465,276	3,465,276	순증	-
순세계 잉여금	-	887,852	887,852	순증	2020년 결산전망에 따른 법정잉여금을 제외한 잉여금
법정 잉여금	-	2,577,424	2,577,424	순증	· 조정교부금 7,684억원, 재정보전금 1,059억원 · 징수교부금 1,031억원 · 교육청 전출 등 1조 6,000억원

##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3,13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9,224억원 대비 7.2%(2,090억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총 계	2,922,377	3,131,401	209,025	7.2	
행 정 관 리	소 계	837,293	837,293	-	-
	행정운영경비	803,868	803,868	-	-
	재무활동	3	3	-	-
	사업비	33,422	33,422	-	-
교 부 금	2,085,084	2,294,109	209,025	10.0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증감률
	기 정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083,064	2,292,089	209,025	10.0
재정보전금	1,675,686	1,781,631	105,945	6.3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407,378	510,458	103,080	25.3

## II . 검토의견

### 1.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은 44조 6,494억원으로  
기정예산(40조 4,124억원) 대비 10.5%(4조 2,370억원) 증액된 수준임.
-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3조 4,653억원) 등 일반회계 3조  
6,228억원(85.5%)과 특별회계 6,142억원(14.5%)으로 구성되며,
-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법정의무경비(3조 621억원, 72.3%)와 재정투자사업  
(1조 1,749억원, 27.7%)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무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2020  
회계연도 발생분 3조 4,653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가	
			금 액	비율
총계 규모	44조 6,494억원	40조 4,124억원	4조 2,370억원	10.5%
일반회계	31조 5,448억원	27조 9,219억원	3조 6,228억원	13.0%
특별회계	13조 1,046억 원	12조 4,905억원	6,142억원	4.9%

#### 추경 규모 : 4조 2,370억 원

- 법정의무경비 등 ..... 3조 621억 원
  - 자치구전출 9,775억원, 교육청전출금 5,965억원, 자치구 교부금(도시개발) 17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8,879억원, 타회계 전출 3,061억원
  - 국고보조금 반환 399억원, 채무상환 1,616억원, 예탁금 516억원 등
- 재정투자사업 ..... 1조 1,749억 원

## 2. 재무국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3조 7,4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3조 4,653억원) 증액된 수준으로,
  - 2020회계연도 결산상 초과세입금 발생 등에 따른 일반회계 잉여금(3조 4,653억원)을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법정 의무경비(3조 621억원) 및 재정투자사업(1조 1,749억원)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목	2021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일반회계	20,279,266	23,744,942	3,465,276	17.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3,465,276	3,465,276	순증
순세계잉여금	-	887,852	887,852	순증
법정잉여금	-	2,577,424	2,577,424	순증

### 가.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 편성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2조 9,298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5,355억원을 합한 3조 4,653억원으로, 전년(2조 3,044억원) 대비 1조 1,608억원이 증가(50.4%)한 수준임.

#### '2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3조 4,653억원

- 세입초과징수 : 2조 9,298억 원(예산 : 32조 9,430억원, 결산 : 35조 8,728억원)
  - ▶ 지방세 초과징수 : 3조 8,406억 원(예산 : 19조 5,524억원, 결산 : 23조 3,930억원)
  - ▶ 세외수입 등 부족징수 : △9,108억 원(예산 : 13조 3,907억원, 결산 : 12조 4,799억원)
- 세출불용액 : 5,355억원

〈202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결산 (A)	세출결산			순 세계 잉여금 (A-B-C-D)
		집행액(B)	이월액(C)	실제보조금 반납금(D)	
32조 9,430	35조 8,728	31조 9,521	3,523	1,031	<b>3조 4,653*</b>

\* [초과세입액 2조 9,298억원] + [세출예산 집행잔액 5,355억원]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A) + (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증가율		
‘21년 편성	3,465,276	50.4	2,929,780	535,496
‘20년 편성	2,304,433	7.6	1,840,672	622,437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99,989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64,011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99,389

○ 2020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3조 4,653억원) 중 조정 교부금(7,684억원) 등 법정 의무경비 재원으로 사용되는 ‘법정잉여금’ 편성 규모는 2조 5,774억원(74.4%)으로, 전년(1조 4,694억원) 대비 75.4%(1조 1,080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세목	구분	2021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일반회계		20,279,266	23,744,942	3,465,276	17.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3,465,276	3,465,276	순증
순세계잉여금		-	887,852	887,852	순증
법정잉여금		-	2,577,424	2,577,424	순증

## 〈 법정 의무 경비 〉

- ◆ **법정 의무 경비(A+B+C+D) ..... 2조 5,774억원**
  - **교육청전출금(A) ..... 5,965억원**
    - 법정전출금 ..... 3,585억원
      - 보통세 증수분(3조 4,010억원)×10% + 담배소비세 증수분(408억원)×45%
    - 지방교육세 전출 ..... 2,380억원
      - 지방교육세 증수분 등(2,380억원) × 100%
  - **자치구전출금(B) ..... 9,775억원**
    - 조정교부금 ..... 7,684억원
      - 보통세 증수분(3조 4,002억원) × 22.6%
    - 재정정보전금 ..... 1,059억원
      - 특별시분재산세 증수분(1,059억원) × 100.0%
    - 시세징수교부금 ..... 1,031억원
      - 자치구 위임징수 시세 증수분(3조 4,360억원)의 3%
      - ※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제외
  - **타회계전출(C) ..... 1,156억원**
    - 도시지역분 증수분(1,121억원) 3개 특별회계 법정지원(100%)
      - ※ 도시개발특별회계 70%, 주택사업특별회계 20%, 교통사업특별회계 10%
    - 지역자원시설세 증수분(35억원) × 1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D) ..... 8,878억원**
    - [(순세계잉여금(3조 4,653억원) - 법정경비(1조 6,896억원))] ÷ 2

○ 이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서의 순세계잉여금은 8,878억원(25.6%)으로 전년(8,350억원) 대비 6.3%(528억원) 증가한 수준임.

※ 전년 당초 (가용)순세계잉여금 5,925억원 대비 49.8%(295억원) 증가한 수준임.

※ 2020년 재무국 추경 (가용)순세계잉여금 8,350억원 = 5,925억원(정당) + 2,425억원 (조례개정으로 감채기금 적립 대상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2020.5.19.시행)하여 예외적으로 늘어난 수치임).

## 나. 과도한 규모의 세입 추가경정예산

- 이렇듯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 잉여금 예산은 3조 4,653억원에 달하여 전년(2조 3044억원) 대비 50.4%(1조 1,608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 이는 2020회계연도에 발생한 초과세입 2조 9,298억원과 5,355 억원에 달하는 집행잔액 발생에 의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A) + (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증가율		
‘21년 편성	3,465,276	50.4	2,929,780	535,496
‘20년 편성	2,304,433	7.6	1,840,672	622,437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99,989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64,011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99,389

- 초과세입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가격 인상과 거래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 2조 8,377억원, 지방소득세 6,746억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초과세입(3조 8,406억원)에 의한 것임.
- 과도한 초과세입 발생으로 매년 이를 다음연도 세입(잉여금)에 편성 해 오고 있는바,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결국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추계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임.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예산대비		19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과부족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율 (B/C)
<b>계</b>	195,524	233,930	38,406	119.6	204,581	29,349	114.3
취 득 세	46,330	74,707	28,377	161.2	55,908	18,799	133.6
지방소득세	54,331	61,077	6,746	112.4	58,059	3,018	105.2
재 산 세	29,990	32,040	2,050	106.8	28,411	3,629	112.8
지방소비세	20,414	19,428	-986	95.2	19,283	145	100.8
기 타 세 목	44,459	46,678	2,219	105.0	42,920	3,758	108.8

- 따라서, 재무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무국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 추가경정예산의 발생에 주된 원인이 되는
- 지방세, 특히 취득세의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원칙에 맞는 서울시 재정운영의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다. 지방세세입 추가경정예산 증액 필요성

- 2021년도 지방세 세입 본예산 규모는 20조 2,793억원 수준으로, 전년도 지방세 징수액(2020회계연도 결산액 23조 3,930억) 보다 무려 3조 3,693억원(△16.8%) 적은 규모로 지방세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1년 지방세수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 증감		증 감 률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지방세수입	19,552,425	19,552,425	20,023,706	471,281	471,281	2.4%	2.4%

<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외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지방세수입	19,552,425	24,320,748	23,393,017	245,723	20,530	661,478	119.6%	96.2%



- 지난 5년간 지방세수입 예산 대비 결산 결과를 보더라도, 매년 10%에서 20%의 지방세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년도 결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 경제성장률, 세수신장률, 부동산 가격 상승 추이 등을 볼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5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B/A)
2020	19조5,524억원 (전년대비7.3%증)	19조5,524억원	23조3,930억원	3조8,406억원	19.6
2019	18조2,213억원 (전년대비6.6%증)	18조2,213억원	20조4,581억원	2조2,368억원	12.3
2018	17조965억원 (전년대비9.9%증)	17조965억원	19조1,033억원	2조168억원	11.7
2017	15조5,554억원 (전년대비10.1%증)	15조5,554억원	17조8,171억원	2조2,617억원	14.5
2016	14조1,258억원 (전년대비2.5%증)	14조1,258억원	16조5,693억원	2조4,435억원	17.3

※ 2021년 지방세수입 예산편성액 : 20조 237억원 (20년 예산 대비 4,713억원, 2.4% 증액 편성)

- 한편, 재무국에서는 2021년도 들어 부동산 거래량은 4월말까지 평균 약 16.2%감소하였고,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매월 1%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 1~4월 부동산거래 동향 >** (단위: 건, %)

구 분	'21년	'20년	전년동기 실적 대비	
			거래 건수	증감률
총 계 (1~4월)	121,743	145,318	△23,575	△16.22%
1 월	33,953	41,508	△7,555	△18.0%
2 월	29,006	37,413	△8,407	△20.2%
3 월	31,666	38,656	△6,990	△18.1%
4 월	27,118	27,741	△623	△2.2%

< 최근 5년 간 부동산 거래 현황('17년~'21년)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년	월계	28,306	31,075	34,544	34,895	41,277	47,873	53,433	52,313	36,793	26,519	32,341	40,459
	누계	28,306	59,381	93,925	128,820	170,097	217,970	271,403	323,716	360,509	387,028	419,369	459,828
'18년	월계	40,633	34,686	53,145	31,652	33,947	30,027	41,514	34,132	37,426	42,548	28,748	27,056
	누계	40,633	75,319	128,464	160,116	194,063	224,090	265,604	299,736	337,162	379,710	408,458	435,514
'19년	월계	31,024	18,230	25,427	25,649	28,247	29,547	34,956	32,157	28,099	33,391	35,298	45,910
	누계	31,024	49,254	74,681	100,330	128,577	158,124	193,080	225,237	253,336	286,727	322,025	367,935
'20년	월계	41,508	37,413	38,656	28,320	28,491	40,866	53,369	34,583	34,376	30,595	35,305	42,993
	누계	41,508	78,921	117,577	145,897	174,388	214,254	268,623	303,206	337,582	368,177	403,482	446,475
'21년	월계	33,953	29,006	31,666	27,118								
	누계	33,953	62,959	94,625	121,743								

- 2021년 4월말 현재 지방세수입 규모는 20조 2,793억원으로, 전년도 (2020년 4월말)에 비하여 26.8%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4월말 주요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21년 예산액 (A)	2021.4월			전년동기 징수액(C)	전년대비	
		당월징수	누계징수(B)	진도율(B/A)		증감액(B-C)	비율(B/C)
<b>계</b>	<b>200,237</b>	<b>30,206</b>	<b>76,241</b>	<b>38.1</b>	<b>60,149</b>	<b>16,092</b>	<b>126.8</b>
취 득 세	50,589	7,795	27,486	54.3	20,898	6,588	131.5
지방소득세	51,964	19,570	31,191	60.0	21,332	9,859	146.2
지방소비세	18,243	342	3,819	20.9	4,484	-665	85.2
자동차세등	79,441	2,499	13,745	17.3	13,435	310	102.3

※ 7조 6,241억원 징수(예산대비 진도율 38.1%), 전년동기 대비 6조 149억원 대비 1조 6,092억원 (26.8%) 증가

※ 4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법인신고분이 5월에 징수된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세수는 약 10%정도 증가, 전년동기대비 1,181억원(4.6%)증가

- 한편,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세수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세 세입이 감소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2021년 경제성장률(OECD, '20년 6월 발표) 전망 : -1.2%

-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전년도 결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지나친 보수적 세수추계로 인해 매년 10%에서 20%에 이르는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바,
  - 이는 필요 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여 서울시 재정운영을 왜곡하고, 매년 불필요한 예산 조정 등 행정력 낭비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정한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세입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3. 재무국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3,134억원으로 기정예산(당초) 대비 7.2%(2천 90억원) 증액된 수준임.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총 계	2,922,377	3,131,401	209,025	7.2
행정 관리	소 계	837,293	837,293	-
	행정운영경비	803,868	803,868	-
	재무활동	3	3	-
	사 업 비	33,422	33,422	-
교 부 금	2,085,084	2,294,109	209,025	10.0

-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확정된 자치구교부금 중 ‘재정보전금’ 정산분(6.3%, 1,059억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분(25.3%, 1,031억원) 등 법정전출금 2건에 대한 해당 자치구교부금 정산액 2,090억원을 세출 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증감률
	기 정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083,064	2,292,089	209,025	10.0
재정보전금	1,675,686	1,781,631	105,945	6.3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407,378	510,458	103,080	25.3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합계	2,083,064,010	209,024,672	2,292,088,682	10.0
(세제과)	소계	1,675,686,000	105,944,523	1,781,630,523	6.3
재정보전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1,675,686,000	105,944,523	1,781,630,523	6.3
(세무과)	소계	407,378,010	103,080,149	510,458,159	25.2
시세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407,378,010	103,080,149	510,458,159	25.2

가.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7,816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1조 6,756억 8천 6백만원) 대비 6.3%(1,059억 4천 5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재정보전금 :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분재산세 징수액을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는 법정경비

○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근거<sup>1)</sup>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로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공동재산세전출금’과,

1) - 「지방세 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  
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  
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  
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  
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  
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  
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 공동재산세전출금 교부 현황\_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교부액	1,577,150	1,300,009	1,165,213	1,077,375	982,902

- ※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 2020년 귀속 교부액=2019년 결산상 정산(1,479억원)+2020년 예산액(1조 4,292억원)

-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임.

- ※ 「지방세법」 부칙(2000.12.29.개정) 제8조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 결정한다.

**<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보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교부액	30,780	31,640	32,380	33,280	33,980

○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특별시분 재산세” 결산상 초과세입분에 대한 ‘공동재산세 전출금’ 1,479억 4천 7백만원 (10.1%)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1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재정보전금	1,675,686	1,781,630	105,944	6.3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308-05)	1,675,686	1,781,630	105,944	6.3

○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타세목에 비해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비교적 용이한 세목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임에도,

- 매년 세입추계 오차로 인한 고액의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국의 세목 운영 개선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재산세 초과세입 발생 추이>**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0	29,990	29,990	32,040	2,050	106.8
2019	26,151	26,151	28,411	2,260	108.6
2018	23,694	23,694	24,980	1,286	105.4
2017	21,664	21,664	22,883	1,219	105.6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p>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li> <li>• 주 택 : 시가표준액의 60%</li> <li>• 토 지 : 시가표준액의 70%</li> <li>•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li> </ul>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균등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재정격차가 5.1배(강남 3,870억, 강북 763억)에 달하고 있는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 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재정보전금 제도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실적 > (결산액 기준)

2018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17.7배(강남4,792억, 강북 271억)에서 4.7배(강남2,869억, 강북610억)로 완화
2019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20.1배(강남5,712억, 강북 284억)에서 5.0배(강남3,400억, 강북686억)로 완화
2020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21.9배(강남6,512억, 강북 298억)에서 5.1배(강남3,870억, 강북763억)로 완화

<2020년도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한 재정격차완화 효과,강북구 기준>

-2020년 결산액 기준, 강북구 기준-(단위: 억원/배)

구분	2020년 당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30,700	15,350	15,350	30,700	0	-	-
종로구	1,038	519	614	1,133	95	3.5	1.5
중구	1,572	786	614	1,400	△172	5.3	1.8
용산구	1,448	724	614	1,338	△110	4.9	1.8
성동구	910	455	614	1,069	159	3.1	1.4
광진구	658	329	614	943	285	2.2	1.2
동대문	580	290	614	904	324	1.9	1.2
중랑구	382	191	614	805	423	1.3	1.1
성북구	614	307	614	921	307	2.1	1.2
강북구	298	149	614	763	465	1.0	1.0
도봉구	304	152	614	766	462	1.0	1.0
노원구	546	273	614	887	341	1.8	1.2
은평구	568	284	614	898	330	1.9	1.2
서대문	552	276	614	890	338	1.9	1.2



구분	2020년 당초 재산세 (A)	조정(공통과세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마포구	1,250	625	614	1,239	△11	4.2	1.6
양천구	930	465	614	1,079	149	3.1	1.4
강서구	1,026	513	614	1,127	101	3.4	1.5
구로구	604	302	614	916	312	2.0	1.2
금천구	414	207	614	821	407	1.4	1.1
영등포	1,374	687	614	1,301	△73	4.6	1.7
동작구	726	363	614	977	251	2.4	1.3
관악구	578	289	614	903	325	1.9	1.2
서초구	3,726	1,863	614	2,477	△1,249	12.5	3.2
강남구	6,512	3,256	614	3,870	△2,642	21.9	5.1
송파구	3,048	1,524	614	2,138	△910	10.2	2.8
강동구	1,042	521	614	1,135	93	3.5	1.5

## 나. 시세징수교부금

- 시세징수교부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104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4,073억 7천 8백만원) 대비 25.3%(1,030억 8천만원) 증액된 수준임.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1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시세징수교부금	407,378	510,458	103,080	25.3
징수교부금(308-02)	407,378	510,458	103,080	25.3

-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sup>2)</sup>(「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임.

2)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시세징수교부금은 교부대상 세목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7개 세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세 초과세입(3조 8,406억원) 중 산출 대상 세목(7개)에 해당되는 초과세입(3조 4,360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을 위하여 기정예산(4,074억원) 대비 1,031억원(25.2%)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최근 3년간 지방세세입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억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B-A)	수납율 (B/A)
2020	195,524	195,524	233,930	38,406	119.6
2019	182,213	182,213	204,581	22,368	112.3
2018	170,965	170,965	191,033	20,068	111.7

-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 (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의 징수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이미 연 5,104억원(2020년 결산상)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교부율(3%)로 징수 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3%)의 인하 또는 지방세 조합 설립, (가칭)시세징수 사무소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 시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세징수교부금 자치구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5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계	377,989	100.0	419,907	100.0	424,431	100.0	468,126	100.0	309,633	100.0
종로	13,342	3.5	16,147	3.8	16,150	3.8	16,871	3.6	10,662	3.4
중구	21,496	5.7	24,141	5.7	25,943	6.1	26,240	5.6	18,009	5.8
용산	12,849	3.4	14,774	3.5	13,579	3.2	15,997	3.4	11,617	3.8
성동	11,758	3.1	12,975	3.1	12,574	3.0	14,998	3.2	11,223	3.6
광진	9,628	2.5	11,035	2.6	10,837	2.6	11,700	2.5	7,108	2.3
동대문	9,645	2.6	11,080	2.6	10,909	2.6	11,680	2.5	7,134	2.3
중랑	8,985	2.4	9,502	2.3	9,687	2.3	10,895	2.3	6,549	2.1
성북	10,804	2.9	12,136	2.9	12,147	2.9	13,254	2.8	8,198	2.6
강북	6,668	1.8	7,193	1.7	7,142	1.7	7,866	1.7	4,739	1.5
도봉	7,471	2.0	7,818	1.9	8,095	1.9	8,763	1.9	5,268	1.7
노원	11,747	3.1	12,475	3.0	12,208	2.9	13,948	3.0	8,014	2.6
은평	11,300	3.0	11,984	2.9	11,887	2.8	13,241	2.8	7,834	2.5
서대문	8,540	2.3	9,302	2.2	9,524	2.2	10,744	2.3	6,630	2.1
마포	15,249	4.0	17,379	4.1	17,626	4.2	19,480	4.2	12,677	4.1
양천	12,365	3.3	13,418	3.2	13,472	3.2	15,379	3.3	8,977	2.9
강서	19,103	5.1	20,295	4.8	21,046	5.0	23,155	4.9	15,894	5.1
구로	13,288	3.5	14,836	3.5	14,366	3.4	16,162	3.5	10,951	3.5
금천	9,594	2.5	11,124	2.6	11,760	2.8	12,525	2.7	8,860	2.9
영등포	21,679	5.7	25,845	6.2	26,475	6.2	29,945	6.4	22,719	7.3
동작	10,400	2.8	11,312	2.7	11,195	2.6	12,323	2.6	7,819	2.5
관악	11,127	2.9	12,134	2.9	11,732	2.8	12,838	2.7	7,682	2.5
서초	30,947	8.2	33,882	8.1	35,277	8.3	36,409	7.8	25,298	8.2
강남	48,716	12.9	56,277	13.4	55,372	13.0	60,498	12.9	42,715	13.8
송파	27,712	7.3	29,336	7.0	31,414	7.4	32,960	7.0	21,999	7.1
강동	13,577	3.6	13,507	3.2	14,013	3.3	20,255	4.3	11,057	3.6

※구청별실제집행한내역임.

**<2021년 재무국 전출금 세목별 재원표>** (단위: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액	시세징수교부금 예산편성			공동재산세전출금 예산편성		
		교부대상	교부 율	교부금	교부대상	교부 율	교부금
합 계	20,023,706	13,579,267	3%	<b>407,378</b>	1,645,426	100%	1,645,426
보 통 세 계	17,884,431	비대상					
취 득 세	5,058,937	5,058,937	3%	<b>151,768</b>			
레 저 세	42,702	42,702	3%	<b>1,281</b>			
담 배 소 비 세	580,150	비대상					
지 방 소 비 세	1,824,280	비대상					
주 민 세	601,134	601,134	3%	<b>18,034</b>			
지 방 소 득 세	5,196,430	5,196,430	3%	<b>155,893</b>			
재 산 세	3,394,557	비대상					
특 별 시 분	1,634,326	비대상			1,634,326	100%	1,634,326
도 시 지 역 분	1,760,231	1,760,231	3%	<b>52,807</b>			
자 동 차 세	1,186,241	비대상					
소 유 분	615,065	615,065	3%	<b>18,452</b>			
주 행 분	571,176	비대상					
목 적 세 계	1,938,270	비대상					
지 역 자 원 시 설 세	304,768	304,768	3%	<b>9,143</b>			
지 방 교 육 세	1,633,502	비대상					
지 난 년 도 시 세	201,005	비대상			11,100	100%	11,100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